

#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9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10월 15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 
(안 제4조제1항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2) 입법예고('21. 7. 22.~8. 11.)결과: 의견없음

##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1항)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26년 12월 31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1항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기금 의 존속기한은 <u>2021년 12월 31</u> <u>일까지로 한다. &lt; 단서 신설 &gt;</u></p>	<p>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6년 12월 31</u> <u>일-----</u>. <u>다만, 존속기한을</u> <u>넘어서까지 기금의 존치 필요성</u> <u>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</u> <u>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</u> <u>수 있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 용 추 계 서 미 첨 부 사 유 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

##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,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

### 4. 작성자

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김주헌(02-2133-8615)